

제33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3. 3. 10.(금)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실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 이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예천군 원도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유 공유재산인 폐철도부지에 녹지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나. 추진 필요성

- 「예천 예누리문화공간 조성사업」는 2020년 1월에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5억원

(도비 12.5, 군비 12.5)을 들여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5-1번지 일원 부지면적 21,960㎡(도유지 18,884㎡, 기타 3,076㎡)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낙후지역 주변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임.

○ 현재 경북 도내에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으로 17개 시군, 68개 사업, 2천2백억원 규모로 추진중에 있고, 22개사업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2025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도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낙후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시설 축조가 필요함.

다. 도유지 내에 축조 할 영구시설물

- 시설명 : 예누리 문화공원 시설
- 규모 : 광장,도로,정원,쉼터,놀이터,주차장,관리시설1식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5-1번지 일원

라.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토지)

- 지번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5-1번지 등 15필지
- 지목 : 철도용지(잡종지)
- 사용면적 : 18,884㎡

마. 향후 추진계획

- 2023. 3. : 행정절차 추진완료
- 2023. 6. : 실시설계인가 및 사업인정협의
- 2023. 7. : 공사 착공
- 2024. 12. : 공사 완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제20조(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1항(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심의회의 업무)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의 취지는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5-1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1월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 금번 사업의 주요 시설물(공원시설 등)을 공유재산내에 축조하기 위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제1항 11호¹⁾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 2023년 2월에는 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변경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원안의결 되었으며, 경상북도지사와 예천군수 간에 ‘영구시설물 축조 및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광장, 도로, 정원, 쉼터, 놀이터, 주차장, 족욕장, 관리사무실 등 공원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여 예천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1항1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능함

구도심과 낙후지역 주변을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휴식공간, 치유공간, 위로공간등 공존과 화합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구도심내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녹지공간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공공용시설 설치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는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문화공원 조성후 공원 및 공원내 영구축조시설물과 공원인접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목표 대비 사업의 시행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예천 예누리문화공원 조성사업

- ❖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경북선 예천~어등 간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낙후지역발전사업으로 문화공원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
- 위 치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35-1번지 일원
-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1,250 군비 1,250)
- 사 업 량 : 21,960㎡(도유지 18,884, 기타 3,076)
- 사업내용 : 도로및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관리시설, 녹지 등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성장촉진지역*에 선정된 시군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 성장촉진지역(지역의 낙후도, 인구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선정).

- ◇ 도내 총 17개시군* 2,177억원 68개사업추진('22년까지 22개소 준공)

* 안동, 상주, 문경, 영천, 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 2. :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 확정
- 20. 12.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2. 10.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3. 2~3. : 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및 합의서작성(도↔예천군)
- 23. 6. :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
- 24. 12. : 준공

☐ 위치도

